

|       |              |
|-------|--------------|
| 의안번호  | 2209427      |
| 의 퇴 인 | 김재원 의원       |
| 회 답 일 | 2025. 5. 26. |
| 추계번호  | 25B1929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24조<br>(유해해양생물의 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 <sup>1)</sup> 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신설) | 재량규정 |
|    |                        | 제2항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비어업인의 자격과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할 수 있는 유해해양생물의 종류·개체수 및 포획·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신설)                                                                                                                                      | 의무규정 |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24조<br>(유해해양생물의 관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1)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상세 사유

### □ 비어업인의 유해 해양생물 포획·채취 지원(안 제24조제2항 신설)

- 유해 해양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sup>2)</sup>에 따라 현재 유해해양생물 18종을 지정하고, 해파리 5종, 갯끈풀 2종, 팽생이모자반(해외에서 유입), 플랑크톤 1종에 대해 제거사업을 실시 중임

[표 1] 유해해양생물 18종 목록

| 분류군    | 국명(보통명)                             | 관련사업현황                                                                  |
|--------|-------------------------------------|-------------------------------------------------------------------------|
| 자포동물   | 노무라입깃해파리                            | 아래 [표 2]의 예산 사업 현황<br>및 첨부 [참고자료]<br>유해해양생물 관리 사업<br>실시현황(2020~2024) 참고 |
|        | 보름달물해파리                             |                                                                         |
|        | 작은부레관해파리                            |                                                                         |
|        | 작은상자해파리                             |                                                                         |
|        | 커튼원양해파리                             |                                                                         |
| 식물     | 갯줄풀                                 |                                                                         |
|        | 영국갯끈풀                               |                                                                         |
|        | 팽생이모자반<br>(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어 해상에 떠다니는것) |                                                                         |
| 식물플랑크톤 | 코클로디니움                              | 해당없음                                                                    |
|        | 슈도니치아                               |                                                                         |
|        | 알렉산드리움                              |                                                                         |
|        | 차토넬라                                |                                                                         |
|        | 디노피시스                               |                                                                         |
| 극피동물   | 별불가사리                               |                                                                         |
|        | 아무르불가사리                             |                                                                         |
| 태형동물   | 관막이끼벌레                              |                                                                         |
|        | 세망가시이끼벌레                            |                                                                         |
|        | 자주빛이끼벌레                             |                                                                         |

자료: 해양수산부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55호) 제16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표 2] 해양수산부 유해해양생물 관리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세부사업                              | 사업내용                                                                | 2025 예산 |
|--------------|-----------------------------------|---------------------------------------------------------------------|---------|
| 해파리폴립 제거     |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sup>3)</sup> | 해파리 성체를 포획·채취하지 않고 해파리 폴립(유생)을 제거                                   | 1,260   |
| 갯끈풀 제거 및 관리  |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18년부터 제거를 시작하였으며 ‘18~’24년 중에 최대 서식면적 38,754㎡를 제거                   | 500     |
| 해파리 구제       | 자율관리어업육성 <sup>4)</sup>            | 해파리의 포획·채취 목적이 아닌 어업활동 중 혼합 포획된 개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간접 제거 방식의 사업          | 1,820   |
| 코클로디니움 적조 제거 | 양식등 재해대책비 <sup>5)</sup>           | 유해생물(적조) 구제를 위한 장비(황토, 철망), 시설(선박, 차량 등) 대여 등의 지원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험연구 | 2,976   |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어업인의 유해해양생물 포획·채취 지원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해해양생물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에 대한 그간 지원 사례가 없고, 유해해양생물 제거 방법이 매우 다양하며, 해양 서식 환경, 수온, 기온, 번식 속도 등에 따라 매년 발생 개체수 등의 편차가 커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수산발전기금, 1065-304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42-300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43-302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경제비용추계과 | 박인재 | 김신애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박인재 | 02-6788-4650 | powerreset@nabo.go.kr |

## [참고자료] 유해해양생물 관리 사업 실시현황(2020~2024)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 해파리폴립 제거 사업(해양생태과-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수행방법) 해양환경공단 위탁 시행
  - 해파리 성체를 포획·채취하지 않고 해파리 폴립(유생)을 제거하는 사업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국비 | 550  | 850  | 1,620 | 1,620 | 1,260 |

### □ 갯끈풀 제거 및 관리 사업(해양생태과-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수행방법) 인천 강화군(갯끈풀 주요 서식지) 국비 지원(보조 70%, 지방비 30%)
  - '18년부터 제거를 시작하였으며 '18~'24년 중에 최대 서식면적 38,754m<sup>2</sup>를 제거하였음('18~19년도 각 국비 500백만원 지원)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국비  | 500  | 500  | 500  | 500  | 500  |
| 지방비 | 214  | 214  | 214  | 214  | 214  |
| 계   | 714  | 714  | 714  | 714  | 714  |

### □ 해파리 구제사업(수산자원정책과-자율관리어업육성)

- (수행방법)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비(2억원) 및 지자체 보조(16.2억원,국비 100%)
  - 해파리의 포획·채취 목적이 아닌 어업활동 중 혼합 포획된 개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간접 제거 방식의 사업임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국비 | 1,670 | 1,820 | 1,820 | 1,820 | 1,820 |

□ 팽생이 모자반(해양보전과)

- (수행방법) 부유상태 있는 모자반을 청항선 등 관공선을 활용하여 수거 후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발생량에 따른 추정 소요 예산임
  - 팽생이모자반 제거에 대한 별도 예산사업은 없으며, 부유상태에서는 관공선을 활용하여 수거·처리(해안가 상륙시에는 지자체가 폐기물 수거 예산 등을 활용하여 처리)

<연도별 팽생이모자반 수거량 및 추정 소요예산>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수거량(톤)       | 6,338   | 15.987 | 1.341 | 255  | 928   |
| 처리단가(천원/톤당)* | 176     | 176    | 176   | 176  | 176   |
| 추정 소요예산(백만원) | 1,115.5 | 2.8    | 0.2   | 44.9 | 163.3 |

\* 환경부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고시 : 식물성 폐기물(톤당 176천원)

□ 코클로디니움 적조 제거 사업(어촌양식정책과-양식등 재해대책비)

- (수행방법) 지자체에서 황토살포 시행(국비 100%)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국비 | 3,846 | 3,846 | 3,846 | 2,846 | 2,976 |

\* 황토살포, 현장예찰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비용 포함